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3호 2019. 8. 23. (금)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896호 고한구공탄시장 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2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12호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5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13호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11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14호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1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896호

고한구공탄시장 내 CCTV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고한구공탄시장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0일

정 선 군 수

1. 행정예고명 : 고한구공탄시장 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 예고
2. 시 행 청 : 강원도 정선군청
3. 행정예고기간 : 2019. 8. 20. ~ 2019. 9. 8.(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9. 8. 20. ~ 2019. 9. 8.(20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고한구공탄시장 내 안전관리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설치위치

구분	설치 대상지		비고
1	고한읍	고한로 169 시장 내(토산식당 옆)	
2		고한로 169 시장 내(토산식당 옆)	
3		고한로 169 시장 내(토박이식당 옆)	
4		고한로 169 시장 내(토박이식당 옆)	
5		고한로 169 시장 내(딸부자식당 옆)	
6		고한로 169 시장 내(딸부자식당 옆)	
7		고한로 169 시장 내(오곡식당 옆)	
8		고한로 169 시장 내(오곡식당 옆)	
9		고한로 169 시장 내(피자나라 치킨공주 옆)	
10		고한로 169 시장 내(피자나라 치킨공주 옆)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경제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 팩스 : 033-560-2594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 의 처 : 정선군청 경제과 ☎ 033-560-2358

주 민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고한구공탄시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	--	--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법인) 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의견제출 내용

고한구공탄시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12호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정선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대상 및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공동추진, 경비의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 표창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예고기간 : 2019. 8. 22~8. 30(8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 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13호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정선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폐광지역개발의 근간이 된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합의한 1995년 3월 3일을 정선군 주민운동의 날로 공인화하여 주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으로 확립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매년 3월 3일을 ‘주민운동의 날’ 로 기념일 지정
- 기념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기념일에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예고기간 : 2019. 8. 22~8. 30(8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 까지 정선군의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3·3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선군 3·3주민운동”이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1995년 3월 3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합의를 이끌어 낸 운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일)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3·3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일은 매년 3월 3일로 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위탁)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19-14호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정선군의회회장

1. 제안이유

- 정선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하여 주거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제3조)
- 지원 및 대상에 관하여 규정 (안 제4조)
 -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임차인
 - 건물 준공 후 20년 경과한 단독주택
 -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지원범위 및 규모에 대하여 규정 (안 제5조)
 - 주택 외부 보수 및 경관저해 시설물 철거 또는 개선
 - 가구당 필요 사업비의 50% 지원하되, 지원액은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제7조)
 -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기준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물품구입, 기계 장비 교체사업, 조경사업 및 거짓 부정한 방법 지원제한

3. 예고기간 : 2019. 8. 22~8. 30(8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30일

까지 정선군의회의회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거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주택소유자”란 자연취락지구의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하며, 미등기의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등으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하는 사람
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주택소유자 및 임차인은 주거환경 개선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효과적 주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자연취락지구 내 주택소유자 또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다만, 해당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한다.
2.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국가, 강원도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
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제5조(지원범위 및 규모) ①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
다.

1.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
2.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가구마다 필요한 사업비의 50퍼

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액은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주택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차인의 경우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동의서
4.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5.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대상주택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해당 지원신청 사업이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택개선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단순한 물품구입 및 기계·장비등의 교체사업
2. 조경(수목, 잔디, 조경석, 조형물 등의 식재 또는 설치를 말한다)사업
3. 거주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주택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
4. 신청내용 및 필요한 사업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때
5.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제8조(준용)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대상가구 선정심사 기준 (제6조 관련)

영역	구분	평가기준	배점기준	비고
		합 계	100	
거주기간 (30)	정선군 거주기간 (30)	10년 이상	30	
		7년 이상 10년 미만	27	
		5년 이상 7년 미만	24	
		5년 미만	20	
건물노후도 (20)	건축년도 (20)	30년 이상	20	
		25년 이상 30년 미만	18	
		23년 이상 25년 미만	15	
		23년 미만	10	
주거형태 (10)	주거형태 (10)	자가	10	
		10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8	
		5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6	
		3년 이상(임차인 사용기간)	4	
가구원수 (10)	가구원수 (10)	4명 이상	10	
		3명	8	
		2명	6	
		1명	4	
경관개선 시급성 (30)	시급성 (30)	상	30	
		중	25	
		하	20	

[서식 1]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033) H·P	
가구원수		명	평창군 거주기간		년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금액	
합 계						

※ 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위와 같이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서식 2]

동의(승낙)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동 의 자 (소 유 자)	성명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소유관계		
대 상 건 축 물	소재지		
	사용기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input type="checkbox"/> 10년, <input type="checkbox"/> 영구
	면적		m ²

정선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대상 건축물(토지)
(공동)소유자로서 신청인의 주택수리 및 사용기간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승 낙) 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작성되는 개인정보는 이 사업을 위하여 관련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 생략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 12. 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 4. 10.>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연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수도공급 설비·하수도 등의 정비

- 나. 어린이놀이터 · 공원 · 녹지 · 주차장 · 학교 · 마을회관 등의 설치 · 정비
- 다. 쓰레기처리장 · 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 개량
-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 개량
- 마. 주택의 신축 · 개량